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지방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2건

1)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3조)

-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함.

※ 지방세 심사결정 :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 받도록 단서조항 신설

※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2)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안 제14조)

-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 면제
-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

나.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반영 : 3건

1)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22조)

-「지방세법」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

2)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

-「임대주택법」(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동법 시행령(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의 개정으로 감면 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3)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폐지 법률 제9008호 2008.3.28)됨에 따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

다. 기타 단순 조문 정비 : 4건

1)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26조)

- 법률명칭이 변경(「화물유통촉진법」->「물류정책기본법」)되고, 영업용 창고용에 한해 감면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 명확화

2)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33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3)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3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용법률 명칭 변경

4)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 제31조)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 조직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2) 도 표준 조례안 : 도 세정과-12491호(2008. 9. 25)·도 세정과-13036 (2008. 10. 7.) 및 도 세정과-13152(2008. 10. 9.)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조례 호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며,

제9조 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를 각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과 “취락지구정비계획에”로 하며,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동조 동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및 동조 동항 제2호 본문 중 “재산세”를 각각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및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동조 동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재산세”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및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 본문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제24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하며, 제26조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를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로 하며,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의”를 “국토해양부장관의”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③ (생 략)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생 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 (생략)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 4.~7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1. ~2. (생 략)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 - ---------- 취락지구정비계획---------- ---------- ---------- ---------- ---------- ---------- -------.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현 행	개 정 안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 ---------- ---------- ---------- ---------- ---------- ---------- ---------- ---------- ---------- ---------- ---------- ----------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현 행	개 정 안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_----------.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	1. ----------**「임대주택법」제16조제1**

현 행	개 정 안
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 2.---------- ---------- ---------- ----------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제15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15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

현 행	개 정 안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5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

현 행	개 정 안
	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 략)**	**제22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주택)** ---------- ----------.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동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 ---------- ---------- ---------- ---------- ---------- ----------.
제2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
제31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	**제31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 **국토해양부장관**---------- ----------

현 행	개 정 안
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제33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3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